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93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송재봉 · 서영교 · 임미애
전진숙 · 추미애 · 이연희
박홍배 · 황명선 · 이주희
이용선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보건·복지 등 보호·지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예외는 대상자가 안심하고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권리 보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 실제로 현행 면제 사유에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 관련 사항,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상담·긴급구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보건의료 활동 등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의 권리 보장과 밀접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

육 및 보육행정 관련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보육 현장이나 보육 실태조사·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과정에서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계는 면제 범위 변동 가능성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실태 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육 관리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영유아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6조제2항 중 “제84조제2항에”를 “제84조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통보의무) ① (생 략)	제84조(통보의무)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 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 게 된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의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영 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신상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실 태 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육 관리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영유아의 신
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
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
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
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
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
보를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
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
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② (생 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 략)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u>제84조제2항에</u>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84조제3항에</u>----- ----- ----- ----- ----- -----.
--	--